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출입국관리법」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고용이나 성폭력 또는 마약 등 특정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등 피해를 입힌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3년(다만,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,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,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)”을 “3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1년(다만,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,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,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)”을 “1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「근로기준법」을 위반하여”를 “「근로기준법」 제107조,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으로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

4의2.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람

4의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7조제1항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으로서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

다.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

4의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8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

다.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

4의5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

다.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

⑤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,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,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「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

청하는 사람이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, 제2항제4호, 제2항제4호의3
부터 제4호의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각 호에
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84조의2제3호 중 “2020년 1월 1일”을 “2026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의3(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) ① (생략) ②법무부장관은 「 <u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. 1. 법 제7조의2, 법 제12조의3,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<u>3년</u> (다만,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,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,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)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. ~ 다. (생략) 2. 법 제7조의2, 법 제12조의3,	제17조의3(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「 <u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2. -----

<신 설>

4의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
7조제1항에 따라 처벌받은 사
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
이 지나지 않은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
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
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
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
확정된 날

다.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
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
한 날

<신 설>

4의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
8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
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으로서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
않은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
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
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
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
확정된 날

<신 설>

5. ~ 8. (생 략)

③ · ④ (생 략)

<신 설>

다.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
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
한 날

4의5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
한 법률」 제6조 또는 제10조
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으로서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
않은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
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
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
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
확정된 날

다.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
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
한 날

5. ~ 8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
성,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, 그
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「과건근
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
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
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

	<u>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, 제2항제4호, 제2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제84조의2(규제의 재검토)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84조의2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의 기준: <u>2020년 1월 1일</u>	3. ----- <u>2026년 1월 1일</u>
3의2. ~ 5. (생략)	3의2. ~ 5. (현행과 같음)